

1) 진정(陳情)을 통한 해결

1922년 말 1923년 초의 면별 농민집회는 농민들이 소작관계를 둘러싼 문제를 면사무소와 군 당국에 진정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중의 항일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당국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진정하였다는 것이 다소 기이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관과 민의 관계와 분쟁해결의 문화를 감안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총독부는 사적 계약관계인 소작관계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조절자로서 스스로를 정의하였으며,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력을 통한 분쟁해결을 오히려 주된 분쟁해결방식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즉, 경찰과 각급 행정관청이 사적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독부의 기본입장이었다. 일제 당국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사상을 불온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식민지 국가의 권위를 개인의 경제관계, 재산관계에 우선시하였다. 농민들이 지주·소작관계를 둘러싼 문제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관에 호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가능했고 또 불가피했던 것이었다.

당국은 스스로의 권위를 경제와 사회에 우선시했던 만큼 농민들의 호소를 묵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농민의 집회를 해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어느 정도는 지주들을 설득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3년 초 농민들이 어느 정도 지주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쟁의가 주로 한국인 지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지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데 상대적으로 주저함이 적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당국이 농민들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작쟁의가 확산되자 순천과 별교의 대지주들은 전남흥농회(鮮南興農會)라는 지주단체를 조직하여 농민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는데, 이에 당황한 당국은 곧바로 지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일본인 지주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일제는 더욱 발빠르게 지주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¹⁾

비록 일제가 식민지 국가의 권위를 경제와 사회에 우선시켰다고 하더라도 농촌사회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1920년대 상황에서 지주들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3·1운동 이후 진작된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억누르고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주제를 보호·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농민운동이 확산되자 외견상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주 보호의 입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각 면 농민대회와 순천농민대회연합회가 처음 조직될 당시 초대를 받거나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한 경찰간부와 행정관리들은 농민운동의 위협을 느끼자 농민들의 모임을 공개적으로 방해하였다. 농민회의 총회는 경찰관리의 감시를 받으며 진행되기 일췌였고, 경찰관리들은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경고를 하고 나아가서는 모임을 해산시키기도 했다.²⁾

농민들의 진정 전술은 관의 우호적 개입을 유도하여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관의 개입이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폭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관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1923년 전반기조차 농민들은 관의 편파적인 개입을 성토했고 심지어는 면주재소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³⁾ 따라서 노골적으로 탄압을

1) 『동아일보』 1923. 3. 7·1923. 4. 30.

2) 『동아일보』 1924. 10. 30·1925. 4. 18·1925. 5. 4.

3) 『동아일보』 1923. 4. 9.

드러낸 1924년에 농민들이 관의 개입이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규탄하였음은 당연한 것이었다.⁴⁾

농민운동이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자 당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하고 억압적인 모습을 띠어갔다. 1920년대 말에 이르면 경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농민회의 모임이 아예 금지되거나 경찰의 허락을 얻어 제한된 소수만이 참석하는 정도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지도자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⁵⁾

그러나 당국과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해갔다고 해서 농민들이 당국을 상대로 격렬한 투쟁만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운동이 공개적인 대중운동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현실적 삶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과 교섭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4) 『동아일보』 1924. 7. 5.

5) 『동아일보』 1929. 4. 11 · 1929. 10. 10 · 1929. 10. 27 · 1930. 2. 25.